

# 정보공개 규정

<최종개정일 2020.5.2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국토교통부정보공개규정(이하 “훈령”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란 본사 및 소속기관이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처리부서”란 해당 정보공개 업무를 취급하는 본사 각 본부·실·

단의 단위부서 및 산하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사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담당자의 의무 등)** ① 각 소속별 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문서는 제8조제6호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 시스템관리자(IT운영센터장)는 고객의 정보를 3년마다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공개책임관)** ① 공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의 총괄·조정을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인재경영실장을 지정하고 정보공개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3. 정보공개 담당 직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② 정보공개책임관을 보좌하고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재경영실 총무처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 분류, 이첩 등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공개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각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소속기관장으로 하고 정보공개담당관은 각 소속기관장이 정한다.

**제6조(자발적 사전공개대상 정보)** ① 자발적 사전공개 대상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환경, 복지, 개발사업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보
2. 교육·의료·교통·조세·건축·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2에 따른 계약관련 정보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수의계약 내역 정보
  - 다. 「국가재정법」 제9조에 따른 재정정보
  - 라.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른 재정운용상황에 관한 정보

마. 그 밖에 법령에서 공개, 공표 또는 공시하도록 정한 정보

4. 국회 및 지방의회의 질의 및 그에 대한 답변과 국정감사 및 행정  
사무 감사 결과에 관한 정보

5.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  
는 정보

② 자발적 사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의 종류,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은 변동이 있을 때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  
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사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기안 담당자가 결재권자의 결재 후 지체 없이 홈페이지 사전  
정보공개 자료실에 공개유형별로 원문 그대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각 소속의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정보공개 대상 중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점검하고 적극 공개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자발적 사전공개 범위)** ① 결재문서 중 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자발적 사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로 분류된 결재문서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업무로서 자발적 사전공개 가치가 없다고 인  
정되거나 청구에 의해서만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는  
자발적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로 분류된 문서는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  
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부분을 제외한 공개부분에 대해서

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단서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정보공개 처리 예외사항)** ① 공사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부존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진정·질의·제안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민원사무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③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결정통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요구한 경우에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④ 사전에 공표된 정보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가 있는 곳(공사 홈페이지 등)의 안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 ①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및 제9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본사 정보공개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3년에 1회 이상 세우고 이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바뀌어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공사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처리부서 단독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외부위원 3명 포함)으로 구성하며, 심의회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1. 위원장 : 정보공개책임관

2. 내부위원 : 법무실장 그리고 위원장이 선정하는 각 본부·실·단의 수석처장 2명

3. 외부위원 :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학계·법조계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삭제

④ 심의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한 경우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회의안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 또는 관련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심의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회의수당 지급 세칙」에 정한 기준에 따라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관리한다.

⑧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으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청구한 이의신청
2.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3. 제3자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
4. 이미 심의회를 거친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제9조의2(정보공개실무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원활한 운영과 신속한 정보공개결정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심의회(이하 “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의회는 정보공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규담당자, 처리부서 업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주관부서 정보공개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③ 각 소속기관은 정보공개담당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위원장이 자체실정에 맞게 정한다.

④ 실무심의회는 제9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⑤ 외부위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는 제9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정보공개처리절차)** ①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정보공개청구서의 내용이 2이상의 부서에 관련이 되거나 처리부서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성의 정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서를 지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청구내용의 처리부서로 지정된 부서는 청구내용이 관련된 부서의 업무협조를 받아야 하며, 업무협조의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시행규칙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주관부서에 그 처리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수수료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수수료에서 50퍼센트를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전자파일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문서·도면·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파일 용량이 크지 않아 전송·복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
2. 여러 개의 파일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3. 부분공개 등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로 편집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공개가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시행령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퍼센트

2. 시행령 제17조제3항제3호 : 100퍼센트

④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우표요금을 징수한다.

**제11조(정보공개교육)** 정보공개담당관(소속기관 포함)은 소속직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

2. 자발적 공개대상정보의 범위, 공개주기·시기 및 방법

3.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정보공개방의 구축 및 운영)** ① IT운영센터장은 정보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을 갖추어야 한다.

② 각 본부·단·실장 및 각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정보공개방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13조(정보공개 운영계획 및 실적평가 등) ① 각 본부·단·실장 및 각 소속기관장은 정보공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각 소속의 정보공개 운영실적을 내부경영평가지표로 선정하여 활용 할 수 있다.

부칙 <제2020-33호, 2020.05.27.>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